

(가칭) 평창 산양삼 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평창군의회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30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4. 4. .

제 출 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평창 산양산삼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재배·생산·유통·가공 등 산업전반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통해 평창군의 대표적 임업소득자원으로 육성·발전시키고,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 역할을 하고자 함

- 평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활용한 특구지정으로의 지역 명품에 대한 상징성으로 이미지 홍보 및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하며,

- 특히 우리 군에서 열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국제적 스포츠행사와 연계하여 평창 산양삼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산양삼 수출 등 미래 지속가능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특구의 명칭

- 평창 산양삼특구

나. 특구의 위치 및 면적

구분	위치(주소)	임야면적	산림소유
	합 계	2,079,258㎡	
대상지 1	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산173 번지	659,900㎡	군유림
대상지 2	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407 번지	1,419,358㎡	군유림

다. 대외적 표시방법

- 한 글 : 평창 산양삼특구
- 영 문 : Pyeongchang Wild-cultivated Ginseng Zone

라. 주요사업 내용

- 특구지정을 통해 산양삼 6차산업화 비즈니스모델 창출
 - 1차산업 : 산양삼특구 기반 구축
 - 2차산업 : 산양삼 지역산업화
 - 3차산업 : 산림치유와 연계 마케팅 강화

3. 참고사항

가. 주민의견 청취(공람·공고)

- 공람기간 : 2014. 1. 29. ~ 2014. 2. 20.(22일)
- 공람방법 : 평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군보, 읍면 게시판
- 공람장소 : 평창군청 산림과
- 제출의견 : 없음

나. 주민공청회

- 일 시 : 2014. 2. 13.(목) 14:00~16:00
- 장 소 : 평창군청 대회의실
- 주요의견 : 산양삼특화생산단지에 지역 농가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
☞ 답 변 : 특구로 지정되면 그 효과는 평창군 전체에 미치게 되어 관내에서 생산된 산양삼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구 상표로 판매가 가능함.

다. 추진현황

- 평창 산양삼 특구지정을 위한 용역 : 2013. 9. 4.
 - 미래전략산업연구원 대표 김효근
- 평창 산양삼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착수 보고회 : 2013. 9. 16.
- 중간용역 보고회 개최 : 2013. 11. 7.
- 최종용역 보고회 개최 : 2013. 12. 23.
- 중소기업청 지역특화특구단 협의 : 3회
- 중소기업청 지역특화특구단장(서지필) 현장 방문 : 2014. 1. 16.
- 평창군 산양삼 특구계획 확정(결심) : 2014. 1. 28.
- 평창군 산양삼 특구 지정을 위한 중앙부처 사전협의 요청 : 2014. 2. 4.
 - 산림청, 특허청 회신(안전행정부 미회신)
- 평창군 산양삼 특구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: 2014. 2. 13.
- 환경부는 환경영향기본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회신 : 2014. 2. 19.
- 평창 산양삼 특구 계획 보고(강원도청) : 2014. 2. 21.
- 평창 산양삼 특구 계획 일부 변경(임도 당초 16km ⇒ 2km) : 2014. 2. 24.
-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입지컨설팅 실시 : 2014. 2. 27.
- 원주지방환경청 회신 : 2014. 3. 10.(사전입지컨설팅 대상이 아님)
- 평창군 산양삼 특구 지정을 위한 추가 산림청 협의 : 2014. 3. 11.
- 산림소득사업 육성을 위한 한국임업진흥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: 2014. 3. 13.
- 환경부 재협의 : 2014. 4. 1.(승인)
- 서울대 웰니스산업지원센터와 MOU 체결 : 2014. 4. 8.

라. 향후일정

- 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: 2014. 4.
-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특구 지정 신청 : 2014. 상반기

4. 관계법령 발취

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」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①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(이하 "특구"라 한다)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법령에 우선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생략

제5조(주민 등의 의견청취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, 공청회를 열어 주민·기업·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붙 임 : 평창 산양삼 특구 계획(안) 1부. 끝.